

## 「2023 고용안정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」 대·중·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

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는 인천 소재 뿌리업종 관련 중소·중견 제조기업 생산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, 자발적 고용창출 환경을 조성하고자 「대·중·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」을 시행하오니 중소·중견 뿌리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

2023년 7월 5일  
인천테크노파크 원장

### I 사업개요

- 사업명 : 2023 대·중·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
- 공고/접수기간 : 2023년 7월 5일 ~ 7월 21일 18:00까지
- 지원대상 :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명시된 ‘중소기업’ 또는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」 제25조에 따른 ‘중견기업’으로서, 「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명시된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 
**※ 기타 참여 자격요건은 ‘Ⅲ. 자격요건 및 채용약정’ 참조**
- 지원내용 : 생산량 증대 및 제품의 불량률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기 구축된 설비의 개량 및 커스터 마이징 등 솔루션 차원의 도입·구축 지원  
**※ 주요 생산 설비의 신규도입, 소프트웨어, 이동이 가능한 소형 물품은 지원 불가**  
예) 사출기, 프레스머신, 선반, 3D CAD, CAD/CAM 등  
**※ 주 생산 설비의 생산성 향상 및 불량률 감소를 위한 커스타마이징 설비는 지원 가능**  
예) 집진기, 코일카, 컴프레셔, 원자재 자동 공급장치 등  
**※ 관련 사항은 현장평가 시 평가위원의 현장 및 설비 확인을 통하여 종합적 판단 실시 하며, 평가위원 2인의 만장일치 적합이 아닌 경우 부적합 판정 적용**
- 참여방법 : 인천 기업지원 종합시스템 ‘비즈오케이(<https://bizok.incheon.go.kr>)’ 온라인 신청
- 수행기관 : 인천테크노파크

## II 지원내용

- 지원기간 : 3개월 이내 또는 사업기간 : 2023년 10월 30일 이내
- 지원내용 : 기 구축된 설비의 개량 및 커스터 마이징 등 솔루션 차원의 도입 · 구축 지원  
※ 선정된 기업은 인천경영자총협회에서 주관하는 뿌리전문가 현장애로 기술컨설팅 필수 진행(무료)
- 지원금액 : 신규 채용약정 기준에 따라 최대 30백만원

구 분	채용약정 인원	지 원 금 액	비 고
지원금액	1인	15백만원 이내 지원	자기부담금 20%
	2인	30백만원 이내 지원	이상 구성필요
사업비 구성 예			사업비 3,500만원 = 국고보조금 2,800만원(80%) + 자기부담금 700만원(20%) 사업비 3,750만원 = 국고보조금 3,000만원(80%) + 자기부담금 750만원(20%) 사업비 1,875만원 = 국고보조금 1,500만원(80%) + 자기부담금 375만원(20%) 사업비 6,000만원 = 국고보조금 3,000만원(50%) + 자기부담금 3,000만원(50%) 사업비 4,500만원 = 국고보조금 3,000만원(67%) + 자기부담금 1,500만원(33%)

※ 부가세, 원가분석비 및 각종 수수료 등은 사업비에 미포함하며 전액 참여기업이 부담

## III 자격요건 및 채용약정

- 자격요건

### 자격요건

- ▶ 사업자등록 상 사업장 주소지를 인천광역시에 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뿌리기업
    - 2022년 12월 31일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기준
  - ▶ 2022년 매출액 5억 이상의 뿌리기업 (2022년 표준재무제표 기준)
    - 공고 마감일 기준 2022년 표준재무제표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자는 2021년 표준재무제표로 대체 가능
  - ▶ 공장등록증상 공장의 업종 분류번호가 뿌리산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
  - ▶ 공장등록 제조기업
- ※ 주 사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, 공장에는 실제 제품 제조 공정이 존재하여야함
- ▶ 위 항목을 모두 충족하면서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기업

1	영업이익 감소 : 직전 3개년도 영업이익 평균이 시작년도 영업이익 대비 감소한 기업
2	고용 감소 : 직전 3개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 수 평균이 시작년도 말 대비 감소한 기업
3	위기산업군 : 뿌리산업 중 기반공정기술 분야 뿌리기업(뿌리산업 범위 분류코드 기준)

## ○ 채용약정

### 채용 조건

- ▶ 사업선정 완료 후 협약 시 신규채용인력 약정진행(지원금 15백만원 당 1명 의무채용)
  -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한민국 국민
  - 신규 채용인력은 채용 시점부터 12개월 이상 채용유지 필수
- (채용인원이 중도 퇴사할 경우, 대체인원을 채용해야 하며 공백 기간을 제외한 고용보험  
가입일자 기준, 재직 기간이 12개월 이상 되어야 함)
- ※ 채용약정 불이행시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또는 36개월 간 「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 
사업」에 참여제한
- ▶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이며, 정규직 또는 1년 이상 계약직으로서 월 임금이 당해년도 최저임금 이상인 자  
(주40시간 월 최저임금기준)
  - 동일기업에 최근 6개월 이내 근무한 이력이 있을 경우 인정 불가
  - 채용일 기준 세법에 따라 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
  - 신청기업 대표 및 임원과 직·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친인척 관계(직계존비속, 형제, 자매 등)에 해당할 경우 인정 불가
- ▶ 위 항목을 모두 충족하면서 아래 구직자 채용

### 조 건

최근 5년 이내 뿌리산업 분야에서 3개월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구직자

- 신청기업의 소재지가 남동구, 부평구, 서구인 경우 : 근로자의 주민등록거주지 제약 없음
- 신청기업의 소재지가 남동구, 부평구, 서구 이외인 경우 : 근로자의 주민등록거주지를  
남동구, 부평구, 서구로 제한함

- ▶ 최대 36개월 간 기업정보 활용(고용유지 실태, 매출성과 점검 등) 등의 필수

※ 위 모든 사항들은 선정과정에서 단계적인 평가를 통하여 확인하며, 기업이 고의적·악의적으로 본 사업에  
참여하거나 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제외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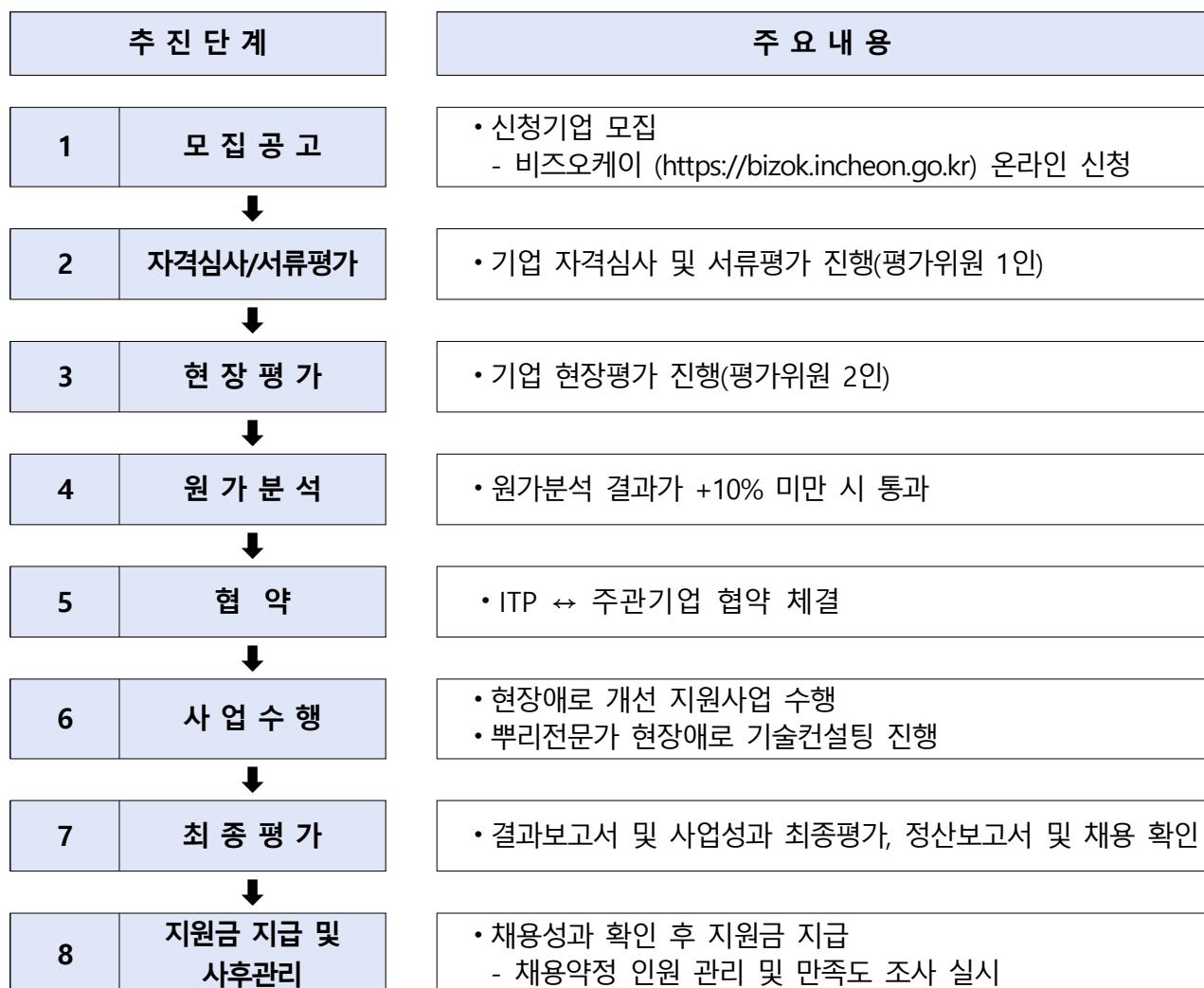
## ○ 지원 제외 대상 기업

- ▶ 인천광역시 소재의 '뿌리기업'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
- ▶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  - 직전 3개년도 영업이익 평균이 시작년도 영업이익 대비 감소한 기업
  - 직전 3개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 수 평균이 시작년도 말 대비 감소한 기업
  - 뿌리산업 범위 분류코드가 기반공정기술 분야인 기업
- ▶ 국세, 지방세 및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중인 경우
- ▶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
- ▶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
- ▶ 휴폐업중인 기업의 경우
- ▶ 정부(지자체) 및 유관기관에서 기 지원된 과제(중복지원)의 경우
- ▶ 2022년 표준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 또는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
- ▶ 지원 금액에 맞는 신규 채용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

- ▶ 2022년 표준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
- ▶ 뿌리산업일자리센터의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참여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
- ▶ 『2023년 인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』 내에서 '뿌리기업 채용장려금 지원사업' 또는 '뿌리산업 선도·모듈형 기업지원사업'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하고 있는 기업
- ▶ 결산자료 기준 최근 3개년도 표준재무제표 자료 제출이 불가한 기업
- ▶ 임금체불, 최저시급 미만, 근로계약서 미작성, 부당노동행위강요,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 등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
- ▶ 인천지역에서 타 시, 도, 군으로 사업장 이전 계획이 있는 기업
- ▶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
- ▶ 그 외 선정과정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(자본 보조적 지원 등)

## IV 신청접수 및 평가 · 선정

- 접수기간 : 2023년 7월 5일 ~ 7월 21일 18:00 까지
- 신청방법 : 인천 기업지원 종합시스템 「비즈오케이 (<https://bizok.incheon.go.kr>)」 통한 온라인 신청  
- 비즈오케이 신청 이후 5일 이내(주말 · 공휴일 제외) 모든 구비 서류 제출
- 지원절차



## ○ 선정방법

- 신청내역 및 필요성, 공급기업 선정내역, 산출근거가 명시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‘심의평가위원회’의 평가 및 조정·심의를 통해 적정성 심사, 참여기업 선정
  - 총사업비와 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
- 선정기준 : 자격심사/서류평가, 현장평가를 통해 사업계획 적정성 등을 평가
- 자격심사/서류평가 : 외부전문가(1인)로 구성된 평가위원을 통해 신청자격 요건 해당 여부 평가(결격사유 점검 등)
    - 자격심사 : 모든 자격심사 항목을 통과해야 적합

평가지표	평가방법	비고
뿌리기업 여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 시 적합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뿌리기업 확인서,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증, 뿌리기업 업종분류 번호</li> </ul> </li> </ul>	적/부
참여대상 기업여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 시 적합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영업이익 감소 : 직전 3개년도 영업이익 평균이 시작년도 영업이익 대비 감소한 기업</li> <li>- 고용 감소 : 직전 3개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 수 평균이 시작년도말 대비 감소한 기업</li> <li>- 위기산업군 : ‘뿌리산업 범위 분류코드’ 중 기반공정기술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</li> </ul> </li> </ul>	적/부
상시 근로자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2022년도 12월 31일 기준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 시 적합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기준</li> </ul> </li> </ul>	적/부
기업소재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기업소재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인천(제조시설 기준)일 경우 적합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기준</li> </ul> </li> </ul>	적/부
부채비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2022년도 부채비율이 1,000% 미만 시 적합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표준재무제표 기준</li> </ul> </li> </ul>	적/부
기업규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2022년도 매출액이 5억 원 이상이고 중소·중견기업일 경우 적합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표준재무제표 및 중소기업 확인서, 중견기업 확인서 기준</li> </ul> </li> </ul>	적/부
국세 및 지방세 완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였으면 적합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</li> </ul> </li> </ul>	적/부
4대 사회보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4대 사회보험료를 완납하였으면 적합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</li> </ul> </li> </ul>	적/부

- 서류평가 : 저격심사를 통과하고 서류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합격

평가지표		평가항목(측정방법)	배점
업력유지 (10)	업력유지	■ 뿌리기술 활용 업력 평가 (사업자등록증 기준)	10점
기업안정성 (30)	영업이익	■ 3년 평균 영업이익 감소여부 (표준재무제표기준 20년 대비 20년, 21년, 22년 영업이익 평균)	10점
	이자보상비율	■ 3년 평균 이자보상비율 (영업이익/금융비용) (표준재무제표기준 20년, 21년, 22년 평균)	10점
	매출액 영업이익률	■ 3년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 (영업이익/매출액) (표준재무제표기준 20년, 21년, 22년 평균)	10점
성장가능성 (20)	유형자산 증가율	■ 3년 평균 유형자산 증가 여부 (표준재무제표기준 20년 대비 20년, 21년, 22년 유형자산 평균)	10점
	연구개발비율	■ 3년 평균 연구개발비율 (연구개발비/매출액) (표준재무제표기준 20년, 21년, 22년 평균)	10점
고용안정성 (40)	고용증가율	■ 3년 평균 고용증가율 (증가인원/전체 직원수) (20년 말 상시 근로자 수 대비 20년, 21년, 22년 말 상시근로자 수 평균) (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기준)	20점
	청년근로자 장기근속률	■ 5년 이상 장기 근속 여부 (청년_39세 이하 5년 이상 근속근로자수/전체 직원수) (22년 말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기준)	20점
가점(6) (증복가능)	일자리지원사업 참여여부	■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 일자리 사업 참여여부	가점 3점
	지역위기산업	■ 뿌리산업 기반공정기술에 해당하는 사업장 (뿌리산업 범위 업종 분류번호 기준)	가점 3점
서류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합격			총점 100+α

※ 공고 마감일 기준 22년 표준재무제표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자는 19년, 20년, 21년 표준재무제표 대체 가능

- 현장평가 : 외부전문가(2인)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의 적정성, 지원의 시급성, 사업비 적정성을 평가하여 지원금액 조정 및 확정, 평균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참여기업 최종 선정

※ 동점 시 선정 기준 : '①설비적정성 ②계획구체성 ③사업추진력' 고득점 순

평 가 항 목		배점
설비적정성 (40)	· 생산성 향상 정도	20점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작업환경 개선 가능성</li> </ul>	10점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현장애로개선을 위한 설비 개량의 적정성</li> </ul>	10점
사업추진력 (2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투자능력, 경영안정성</li> </ul>	20점
계획구체성 (4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업목표의 명확성</li> </ul>	20점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인력·시설 운용계획의 구체성</li> </ul>	20점
가 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뿌리기업확인서,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증, 인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인천광역시 우수기업 인증서(비전기업) 인천 유망중소기업 중견상장사다리기업 - 1개당 5점, 최대 2개 10점</li> </ul>	10점
<b>평가위원 2인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</b>		<b>총점 100+α</b>

○ 신청기업 제출서류

구분	No	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	비 고
공통 필수	1	대·중·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및 채용약정서 1부	서식 1
	2	기업정보확인 동의서 1부	서식 2
	3	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부	
	4	공장등록증 1부 - 공장건축면적 500m <sup>2</sup> 미만의 미등록공장은 건축물관리대장 및 기타 증빙 필요	
	5	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('20, '21, '22) 각 1부 - 검색기간 설정 : 당해연도 말일 기준 예시) 20년도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검색 기간은 '2020.12.31 ~ 2020.12.31'	
	6	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(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) 1부	
	7	표준재무제표('20, '21, '22) 각1부 - 공고 마감일 기준 22년 표준재무제표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자는 '19, '20, '21년 표준재무제표 대체 가능	
	8	국세, 지방세,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(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) 각 1부	
	9	주관기업 및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 각1부	
	10	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1부	
선택 (해당시)	11	서류평가 가점서류 :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 일자리 사업 참여 확인서 - 최대 1개 3점 인정	
	12	현장평가 가점서류 : 뿌리기업확인서,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증, 인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인천광역시 우수기업 인증서(비전기업) 인천 유망중소기업 중견상장사다리기업 - 단, 인증 및 유효기간 내의 가점서류만 인정하며 1개 당 5점, 최대 2개 10점 인정	

※ 별도 서식파일은 '비즈오케이(<https://bizok.incheon.go.kr>)'에서 확인 가능함

## V 문의사항

---

- 문의처 : 인천테크노파크 뿌리산업일자리센터
- 연락처 : (Tel) 032-260-0692~1